

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|
| 의안 번호 | 86 |
|----------|----|

제출년월일 : 2003. 12. 18
제출자 : 최광렬의원외6인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개정(2003.7.18)으로 지방의원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여비 등 지급경비 기준이 개정되어 2004.1.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시·군·자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개정 및 신설(안 제2조)

- 의정자료수집·연구비(월 550,000원 이내 ⇒ 월 900,000원 이내)
- 보조활동비 신설(월 200,000원 이내)

나. 시·군·자치구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 일부 개정(숙박비-별표1)

- 의장·부의장(1야당 41,000원 ⇒ 1야당 46,000원)
- 의원(1야당 22,000원 ⇒ 1야당 25,000원)

다. 시·군·자치구의회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 일부 개정(숙박비-별표2)

- 의장·부의장(1야당 가등급 151 ⇒ 166, 나등급 109 ⇒ 120,
다등급 84 ⇒ 92, 라등급 72 ⇒ 79)
- 의원(1야당 가등급 132 ⇒ 145, 나등급 86 ⇒ 95,
다등급 64 ⇒ 70, 라등급 56 ⇒ 62)

3. 관계법령

가. 지방자치법 제32조,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

나.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제1항

다.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

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항중 “의정자료의 수집·연구에”를 “의정자료의 수집·연구비 및 보조활동비에”로 한다.

제2조 제2항중 “월 550,000원”를 “의정자료 수집·연구비 월 900,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200,000원”로 한다.

별표1(국내여비지급표)중 숙박비를 별지1과 같이 한다.

별표2(국외여비지급표)중 숙박비를 별지2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2조(의정활동비 지급)</p> <p>① ----- <u>의정자료의 수집·연구에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월 550,000원</u> -----.</p> <p>(단서 조항 생략)</p> <p>③ (생 략)</p> | <p>제2조(의정활동비 지급)</p> <p>① ----- <u>의정자료의 수집·연구비 및 보조</u> <u>활동비에</u> -----.</p> <p>② ----- <u>의정자료 수집·연구비</u> <u>월 900,000원, 보조활동비 월 200,000원</u> -----.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|

(별지 1)

국내여비지급표(제6조제1항 관련)

(단위 : 원)

| 구 분 | 철 도 운 임 | 선 박 운 임 | 항 공 운 임 | 자동차 운 임 | 일 비 (1일당) | 숙박비 (1야당) | 식 비 (1일당)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의 장· 부의장 | 1 등급 | 2등 정액 | 정액 | 정액 | 10,000 | 46,000 | 25,000 |
| 의 원 | 2 등급 | 2등 정액 | 정액 | 정액 | 10,000 | 25,000 | 18,000 |

비고 : 1.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,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.

2. 철도운임란중 1등급은 새마을호특실, 2등급은 새마을호보통실을 말하며,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

3. 수로여행시 웨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.

(별지 2)

국외여비지급표(제6조제2항 관련)

(단위 : 미불화)

| 구 분 | 철도운임 | 선박운임 | 항공 운임 | 자동차 운 임 | 일 비 (1일당) | 숙박비 (1야당) | 식 비 (1일당) | 준 비 금 | 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|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|-----|
| | | | | | | | | 15일 미만 | 15일이상 30일미만 | 30일 이상 | | |
| 의 장 · 부의장 | ·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 의 철도임 ·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| ·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 의 선임 ·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| 1등 정액 | | | | 가등급35 나등급35 다등급35 라등급35 | 가등급166 나등급120 다등급 92 라등급 79 | 가등급107 나등급78 다등급58 라등급49 | 140 | 170 | 195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의 원 | · 공무원의 사 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 는 침대요금 을 필요로 하 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| · 공무원의 사 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| 2등 정액 | | | | | | | | | |

비 고 : 1.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.

가. 가등급 : 동경, 뉴욕, 런던, 로스앤젤레스, 모스크바, 샌프란시스코, 워싱턴, 파리, 홍콩

나. 나등급

(1) 아세이주·대양주 : 대만, 북경, 싱가포르, 우즈베키스탄, 인도, 일본

(2) 남·북아메리카주 : 멕시코, 미국, 브라질, 세이셸, 세인트루시아, 세인트키츠네비스, 아르헨티나,
아이티, 자메이카, 캐나다

- (3) 유럽주 : 네덜란드, 노르웨이, 덴마크, 독일, 러시아, 루마니아, 룩셈부르크, 벨기에, 스웨덴, 스위스, 스페인, 아이슬란드, 영국, 오스트리아, 우크라이나, 이탈리아, 체코, 프랑스, 핀란드, 헝가리
- (4) 중동·아프리카주 : 가봉, 남아프리카공화국, 수단, 아랍에미리트, 오만, 우간다, 코트디부아르, 콩고민주공화국, 쿠웨이트

다. 다등급

- (1) 아세아주·대양주 : 뉴질랜드, 마셜군도, 말레이시아, 방글라데시, 베트남, 브루나이, 아제르바이잔, 오스트레일리아, 인도네시아, 중국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태국, 터키, 파키스탄, 파푸아뉴기니, 필리핀
- (2) 남·북아메리카주 : 가이아나, 나카라과, 도미니카공화국, 바베이도스, 벨리즈, 세인트빈센트, 안티구아바부다, 우루과이, 칠레, 코스타리카, 트리니다드토바고, 파나마
- (3) 유럽주 : 그리스, 리투아니아, 불가리아, 아일랜드, 알바니아, 유고슬라비아, 포르투갈, 폴란드
- (4) 중동·아프리카주 : 니제르, 라이베리아, 리비아, 모리셔스, 모잠비크, 바레인, 보츠와나, 부르키나파소, 사우디아라비아, 상토메프린시페, 시에라리온, 요르단, 이란, 이스라엘, 이집트, 중앙아프리카공화국, 카메룬, 카타르, 케냐, 탄자니아

라. 라등급

- (1) 아세아주·대양주 : 네팔, 라오스, 마이크로네시아, 몽골, 미얀마, 스리랑카, 캄보디아, 피지
- (2) 남·북아메리카주 : 과테말라, 베네수엘라, 볼리비아, 수리남, 에콰도르, 엘살바도르, 콜롬비아, 파라과이, 페루
- (3) 유럽주 : 몰도바,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, 에스토니아, 크로아티아
- (4) 중동·아프리카주 : 가나, 감비아, 기네비스, 기니, 나미비아, 나이지리아, 레바논, 레소토, 르완다, 마다가스카르, 말라위, 말리, 모로코, 모리타니아, 세네갈, 소말리아, 스와질랜드, 알제리, 예멘, 이디오피아, 이라크, 잠비아, 잠바브웨, 튀니지

2.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.